

학생복장 및 용의 규정

제정 2009. 06. 12.

개정 2011. 09. 08.

개정 2012. 05. 25.

개정 2017. 09. 01.

개정 2019. 03. 01.

개정 2021. 03. 0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생의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여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복장) 본교의 학생은 등·하교시 본교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, 형태를 임의로 변형하여서는 안된다.

예) 통바지, 쫄대바지 및 통 줄이기, 단올리기, 주름박기 등

① 교복은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하여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명찰은 학년별로 지정된 것을 소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.

1. 명찰은 천 재질로 가로 5cm, 세로 2cm 크기로 하며, 학년을 구분하기 위해 바탕천과 실색을 달리한다.(바탕천색은 학년별로 노랑색, 적자색, 초록색을 순환함)



③ 기상관계 및 학생 개인적 체감에 따라 동복, 하복, 춘추복을 착용한다.

④ 하복 착용기간에 생활복 상의를 착용하여도 된다.

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교복을 착용할 수 있다.

⑥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, 체육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해당 교과시간에 한하여 착용한다.

⑦ 교복의 형태와 색상은 별지 1과 같다.

제3조(두발) 두발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, 인위적인 변형은 금한다.

① 남녀학생 모두 모발 고풍제(무스, 스프레이, 젤) 사용 및 염색과 파머는 허용하지 않는다. 단 검은색 염색은 예외로 한다.

② 신체상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야할 경우와 특별활동(연예계 등)을 할 경우에는 사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상기 규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.

제4조(신발)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학생 신분에게 맞게 착용하되, 고가의 신발이나

거부감을 주는 신발은 금한다.

① 신사화, 슬리퍼, 샌들, 목이 긴 구두, 사치성 구두는 착용할 수 없다.

②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외화와 구분되는 별도의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양말) 양말의 색상은 자유로우나 숙녀용 스타킹, 그물 양말, 발목 토시 등의 사용은 금한다.

제6조(가방, 휴대품 및 장신구)

① 가방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, 학습에 필요한 용구를 넣을 수 있는 크기로서 화려하거나, 비싸지 않고 튼튼한 것이어야 한다.

② 휴대하여서는 안되는 용품

1. 가발, 써클렌즈, 아이참 등의 장신구

2. 목걸이, 귀걸이, 반지 등의 장신구(단, 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전교육부장의 허가를 얻어 착용할 수 있다.)

3. 무선전화기, 흡기 등

4. 화장품류(학생용도 안됨), 사복 등

제7조(개정) 본 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·개정할 수 있다. 단, 교육관련 법규나 상급기관 지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과 용어 수정 및 신속한 의견반영을 위한 개정은 심의 없이 개정할 수 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